

# 조선전기 향교의 정치·사회적 성격과 쇠퇴 원인

김 정 신\*

- 
- I. 머리말
  - II. 조선전기 향교의 설립·확산과 단양향교
  - III. 향교의 사회·정치적 성격
    - 1. 향교의 사회적 성격
      - 1) 교육 기구로서의 향교 : 과거제와의 연계를 통한 관료예비군의 양성
      - 2) 교화 기구로서의 향교 : 민의 지위 상승과 對民敎化
    - 2. 향교의 정치적 성격 : 수령과 사족의 鄕村共治 기구
  - IV. 조선전기 향교의 교육 기능 쇠퇴와 그 원인
    - 1. 교관들의 부임 기피와 과거제와의 연계 상실
    - 2. 官學的 이상과 신분제적 현실의 충돌
  - V. 맺음말
- 

## 1. 머리말

고려시대 군현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치되었던 향교는 조선 초 군현제가 정비됨과 더불어 전 군현에 확대 설립되었다. 관학으로서 향교는 크게 사회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성격에는 과거제와의 연계를 통해 관료예비군을 양성하는 교육 기구로서의 성격, 여말선초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며 그 위상이 提高된 민을 합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교화 기구로서의 성격을 들 수 있다.

향교의 정치적 성격으로는 수령과 사족의 鄕村共治 기구로서의 성격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향교를 설립·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재지세력의 협조와 재정적 보조를 필요로 하였던 수령과, 향교를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신분을 재생산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던 사족층의 이해가 상응하며 향교의 운영과 향촌 지배를 둘러싼 수령과 재지세력의 ‘共治’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향교의 사회·정치적 기능과 그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조선전기 향교의 교육 기능이 쇠퇴한 원인으로 교관들의 부임 기피와 과거제와의 연계 상실, 향교의

---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官學的 성격과 신분제적 현실이 충돌하였던 상황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조선전기 향교의 설립·확산과 단양향교

유교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국가 통치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의 군현에 학교가 세워지고 아울러 향교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났던 것은 고려 인종년간 이었다.<sup>1)</sup> 그러나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설립되었던 것은 崇儒抑佛을 내세워 강력한 유학진흥책을 펼친 조선에 들어와서였다. 조선은 郡縣制를 강화하고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각 郡·縣마다 향교를 세움으로써 주자성리학의 통치이념을 지방 곳곳에 파급시켰다.<sup>2)</sup>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외방 향교의 설치를 강조,<sup>3)</sup> 남으로는 제주로부터 북으로는 甲山과 孔州(慶源)에 이르기까지 향교를 설치하였다.<sup>4)</sup> 그리하여 세종대는 設邑置守된 州·府·郡·縣에 설치된 향교가 전국적으로 329개를 헤아리기에 이르렀다.<sup>5)</sup>

이처럼 고려시대 부분적으로 설치되었던 향교는 조선 초 군현제가 정비됨과 더불어 전 군현에 확대 설립되었고, 관아와 함께 지방의 공기관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지방관인 수령들에게 향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육성을 촉구했으며 향교의 관리·운영을 의무로서 부과하였다. 이밖에도 국가는 향교의 운영을 위해 교수관의 파견, 位田과 學田의 지급, 노비의 지급, 서책의 분사(頒賜)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태종은 ‘修明學校’를 守令七事의 하나로 넣어 그 성과 여부를 수령 포폄(褒貶)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sup>6)</sup> 그 뒤 성종 조(1469~1494)에는 詳定制度에 의해 전국의 향교에 學田과 노비를 지급하고, 四書五經·諸史·小學·三綱行實錄 등을 배포하는 등 향교의 규모에 통일성을 기하였다.

향교가 지방교육을 위해 각 군현에 세워짐에 따라 충청북도에도 2개 목과 4개 군, 12개 현에 향교가 세워졌다. 우선 목에 설치된 향교로는 청주향교·충주향교가 있었고, 4개 군의 향교로는 단양·괴산·옥천·청풍향교가 있었으며, 12개 현에 세운 향교로는 문의·제천·보은·회인·연풍·음성·청안·청산·진천·영춘·영동·황간향교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근거로 충청북도 향교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 1) 『高麗史』卷73, 「志」卷27, 選舉 2, 學校.
- 2) 조선왕조는 고려 이래의 군현제를 근간으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위로는 8도체제와 아래로는 면리제를 확립시켜 나갔다. 행정구역인 군현은 그 邑勢의 규모에 따라 州府郡縣으로 구획되었고 邑官인 수령은 이에 상응하여 官階상 최고 종2품에서 최하 종6품까지 걸쳐 있었다.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각 郡縣마다 향교가 건립되고 있었던 사정은 여말선초에 걸쳐 확충, 정비된 각읍 향교의 記文에 잘 나타나 있다.
- 3) 『太祖實錄』卷1, 太祖 元年 7月 丁未.
- 4) 『太祖實錄』卷8, 太祖 4年 12月 癸卯;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學校條;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慶道 甲山府 學校條.
- 5) 이러한 사정은 世宗 14年(1432)에 완성된 『世宗實錄』地理志에 잘 나타나 있다. 『世宗實錄』地理志, 京畿道 廣州牧 참조.
- 6) 『太宗實錄』卷12, 太宗 6年 12月 乙巳.

<표 1 충청북도 향교>

향교명	설립연도	직제	정원	비고
청주향교	1444년 이전	교수 1인	90	牧
충주향교	미상	교수 1인	90	牧. 광무1년 移建
청풍향교	고려 충숙왕대	훈도 1인	50	郡
단양향교	태종 16년(1416)	훈도 1인	50	郡
괴산향교	조선초	훈도 1인	50	郡
옥천향교	태조 7년(1398)	훈도 1인	50	郡
문의향교	미상	훈도 1인	30	縣. 광해군 1년 移建
제천향교	공양왕 1년(1389)	훈도 1인	30	縣
보은향교	세종대	훈도 1인	30	縣
회인향교	세종대	훈도 1인	30	縣
연풍향교	중종 10년(1515)	훈도 1인	30	縣
음성향교	명종 15년(1560)	훈도 1인	30	縣
청안향교	조선초	훈도 1인	30	縣
청산향교	태조 7년(1398)	훈도 1인	30	縣
진천향교	태조대	훈도 1인	30	縣
영춘향교	정종 원년(1399)	훈도 1인	30	縣
영동향교	선조대	훈도 1인	30	縣
황간향교	태조 2년(1393)	훈도 1인	30	縣

충청북도에 설립된 20여개의 향교 중 단양향교는 1416년(태종 16)에 단양군수 李作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1548년(명종 3)에 단양 군수로 부임한 退溪 李滉(1501~1570)은 비록 재임 기간은 짧았으나 당대의 儒宗이었던 그의 부임은 단양 지역의 儒風을 새롭게 진작하게 할 계기로 손색이 없었다. 지리적으로 단양은 동쪽과 남쪽으로 영남의 영주, 봉화, 예천 등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sup>8)</sup> 이 지역은 퇴계 이황과 그 문인들의 학문 활동이 지배적이었던 곳이었다. 단양 또한 퇴계 학풍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단양향교는 1557년(명종 12)에 부임한 퇴계 문인 錦溪 黃俊良(1517~1563)에 의해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1557년부터 1558년에 걸쳐 단양의 향교를 이건하고 향교 명륜당을 증창하였다.<sup>9)</sup>

황준량이 부임하였던 1557년경 단양은 10여 년간의 연이은 수재와 한재, 전염병으로 인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고,<sup>10)</sup> 향교 또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교생들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7) 김양식, 「충북지역 향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2002, 9쪽 <충청북도 향교 일람표>를 참조하였음.

8) 『輿地圖書』, 忠清道 丹陽 風俗. “丹陽郡鎭管忠原 東至慶尙道順興府界二十九里 南至同道醴泉郡界三十九里 西至本道淸風府界二十二里 北至堤川縣界五十二里 東北至永春縣界三十五里 西距京三百六十里四日程 西南間距監營三百四十里三日半程 西南間距兵營二百四十里三日程 西南間距水營五百里六日程”

9) 고수연, 「단양향교의 역사」, 『단양향교와 역사·문화』, 2009 참조.

었다. 명종 12년(1557) 단양의 피폐상 10조를 상소한 「陳民弊十條」에서 황준량은 전국 8도 중에서 단양의 ‘人民之戶’가 가장 적어 40여 호에 불과하고 산야의 경지 면적이 300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직소하였다.<sup>11)</sup> 이러한 그의 陳疏가 받아들여져 단양군은 10년간 부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지사족의 盛世는 호구와 전결 수 등 농업생산 기반의 충실함과 상호 비례한다. 따라서 “土瘠民貧”<sup>12)</sup> 단양의 土族之勢는 그리 강한 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土族勢가 강한 지역의 교육기구는 대부분 16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며 향교에서 서원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그러나 단양에서는 1662년(현종 3)에 丹巖書院이 건립될 때까지 여전히 향교가 지역의 교육·교화를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요컨대 조선전기 단양향교는 단양 지역의 거의 유일한 교육기구로서 중심점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향교가 쇠퇴하고 그 자리를 서원으로 대체해갔던 다른 지역에 비해 단양향교의 지위와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 Ⅲ. 향교의 사회·정치적 성격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 여기에서 人倫을 밝히고 인재를 육성한다”<sup>14)</sup>라 하였듯이 조선은 국초부터 유교의 보급을 통한 對民敎化와 관료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학교를 중시, 그 설립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과 지방에 官學을 설립하는 형태로 나타나 成均館, 四學, 鄕校 등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成均館과 四學이 중앙인 한성에 위치하며 교화와 교육을 수행하였다면 鄕校는 지방 곳곳에서 교화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조선전기 향교와 교육과 교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土族와 非土族의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분제가 강고히 유지되고 있던 봉건적 현실에서 교화의 주대상은 非土族인 일반 평민층에게, 관료예비군을 양성하는 교육의 주대상은 지배 신분인 土族에게 보다 중점이 두어지고 있었다.

10) 당시 단양의 형편에 대해서는 『한국중세의 역사상』 중 「제3편 조선시대의 사회변동 : 임진난 발발 직전의 지방군현 실태 ; 단양군과 연양현의 경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총서, 2001 참조.

11) 『明宗實錄』卷22, 明宗 12年 5月 17日 己巳.

12) 『輿地圖書』, 忠淸道 丹陽 風俗.

13) 조선 초기에 걸쳐 단양군은 40여명의 생원·진사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19세기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 단양지역의 가문인 생원과 진사를 배출한 성씨는 27개이며, 모두 45명이 입격하였다. 시기별로는 세종~정조대까지 7명에 불과하지만, 19세기 순조대 이후에는 모두 38명이었다. 고수연, 「단양향교의 역사」中 조선후기 단양사족 동향, 『단양향교와 역사·문화』, 2009 ; 김의환, 「단양지역의 세거성씨와 동족마을」중 <표2. 단양과 영춘의 생원과 진사 현황>, 『단양향교와 역사·문화』, 2009 참조.

14) 『三峯集』卷7, 「朝鮮徑國典」學校條.

## 1. 향교의 사회적 성격

### 1) 교육 기구로서의 향교 : 과거제와의 연계를 통한 관료예비군의 양성

成均館과 四學, 鄉校 등 官學의 일차적인 목적은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료예비군의 양성에 있었다.<sup>15)</sup> 조선전기 관학이 과거와 밀착된 體裁를 갖추고 과거 준비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으며, 향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규정상 향교에 入籍되어 있는 교생만이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며 교생이 학업에 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初試에 응할 수 있었다(圓點制). 향교에서의 교과 내용이 곧 과거 출제의 내용으로 이어졌던 것 또한 향교와 과거제가 제도상 상호 보완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향교의 교과 과정은 생원·진사의 시험과목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經國大典』에는 생원 初試의 시험과목이 五經義·四書疑 2편이며, 진사 초시는 賦 1편, 古詩·銘·箴 중 1편을 짓도록 되어 있다. 覆試의 경우도 초시와 같았다. 즉 향교의 교과 내용은 詩文을 짓는 詞章과 유교 경전을 講學하는 講經을 병행하였고, 이러한 체제는 과거제도의 그것에 준하여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향교의 강독 교과에는 강경의 필수과목인 사서·오경과 함께 제술을 위한 柳文, 韓文, 『楚辭』, 『文選』, 策文, 古賦, 古詩 등이 포함되었다. 그밖에 각종 통감류와 『史記』, 『宋元節要』 등 史書類가 있고 주자성리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교과로서 『性理大全』, 『近思錄』 등이 갖추어졌다.

평가 기준 또한 과거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교생들은 교육의 단계마다 日講·月課 등의 考講을 통해 그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했다. 日講과 매월 2회의 제술을 기본으로 하며, 년 2회의 通考 및 제술 시험이 있었고 이때마다 면학 환경을 독려하기 위해 논상(論賞)과 논벌(論罰)이 시행되었다. 향교에서는 고강 점수를 연말에 합계, 해당 수령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 賞罰을 시행하였다. 『經國大典』에는 향교의 考講에서 優等을 하였을 경우 小科初試를 면제하여 會試에 直赴하게 한다는 조항이 실려 있는데<sup>16)</sup> 이 역시 향교와

15) 조선의 교학체계에서 향교는 기초과정을 위주로 하는 書堂·書齋·精舍보다는 높은 단계의 교육기관이었지만 성균관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은 교육기관이었다. 교육 내용의 수준으로 볼 때 향교의 교과가 성균관의 그것에 비하여 반드시 낮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小科에 합격해야 했으며 향교의 교생은 대부분 이 소과 응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학제상 향교는 성균관의 밑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1편 총론 : 조선초기 문교장려책과 경북 향교의 발전」, 『경북향교지』, 1991, 79~80쪽.

과거제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 2) 교화 기구로서의 향교 : 민의 지위 상승과 對民敎化

조선의 교학체계는 官人 양성을 목표로 하는 養人과 함께 민을 대상으로 한 교화(敎化)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 유교는 단순히 지배층 일각만의 정치적 수단에 국한될 수는 없었다. 麗末鮮初 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상승 한편으로 민을 대상으로 綱常 윤리를 보급하려는 지배층의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강화된 대표적 기구가 바로 지방군현에 세워진 향교였다. 군현마다 설치된 향교는 ‘風化之原’<sup>17)</sup>으로서 지방의 民風을 淳化하는 교화 기능을 담당하였다. 즉 향교는 과거제와 연계된 협의의 교육 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이념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 지방교화를 담당하는 광의의 교육 기관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유교 이념을 보편화하고 그에 따른 질서를 확립하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교생의 신분은 양반층으로부터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국역의 대상인 良人 신분에게는 누구라도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다.<sup>18)</sup> 이른바 ‘범민지준수개가입 이불이문지위한(凡民之俊秀皆可入 而不以門地爲限)’이라 하여<sup>19)</sup> 良人 전반이 향교의 교육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up>20)</sup>

공간적인 면에서 전국적인 군현의 분포와 그에 따른 향교의 설립은 유교 교육의 지역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一邑一校의 원칙 아래 거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설립하였던 것은 유교 교육의 파급력이 한층 더 민에게 접근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향교 교생의 정원은 留守府·大都護府와 牧은 90, 都護府는 70, 郡은 50, 縣은 30명으로 정해져 있어,<sup>21)</sup>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4%에 불과

16) 『經國大典』 獎勵條.

17) 『蒼石先生文集』 卷11, 書, 與校中諸君

18) 일단 교생이 되면 그들의 사회신분이 양반인지 평민인지는 법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규정상 국역의 면제, 과거 응시 자격의 획득에서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會試 直赴의 특전, 戶役 면제 등에 있어 다만 교생이라는 신분만이 요구되는 것이지 양반이나 평민이냐는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非士族層에게 향교에 입학하여 교생이 되는 것은 곧 합법적인 신분상승의 기회와 같았다. 이들 앞에는 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譯學生徒와各司의 吏書職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길이 있었다.

19) 『蒼石先生文集』 卷11, 書, 與校中

20) 『경국대전』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양인에 한해 학업의 기회를 허락했다. 학생의 정원은 목·부·군·현 단위에 따라 각각 90, 70, 50, 30명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인 통합수는 1만 5,33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학업의 시작은 7, 8세부터이지만 교생의 연령이 16세로 제한을 받는 것은 16세부터가 바로 국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즉 국가에서 교생의 정원은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된 숫자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 극히 제한된 門戶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교의 설립에 있어 국가는 군·현 단위 면적의 대소(大小)를 구분하지 않고 각 군·현마다 설립할 수 있는 향교의 수를 한 곳으로 제한하는 일괄적 정책을 폈으므로 향교가 포괄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 또한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여기에 강고히 유지되는 사회적 신분제는 과거제와 연계된 교육적 혜택을 지배신분인 양반층에게 집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향교는 고려의 그것에 비한다면 엄청난 수적 증가를 보였으며 유교적 교육의 획기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비록 많은 제한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非士族인 지방민에게도 교육과 출사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가장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밑으로부터 추동하였던 요인은 조선에 들어와 民의 사회 경제적 상승으로 말미암아 민에 대한 종래의 일방적 강압적 통제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의 국정교학인 주자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도덕적 통치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도덕적 교화, 도덕적 통치는 그 대상인 민의 도덕적 능력을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주자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固有하며 어떠한 인간이라도 도덕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았다.<sup>23)</sup>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본성=天理를 자각하고 그 내용을 알아나가야 했는데, 그 과정이 바로 ‘학문’이었다. 이 시기 민이 단순한 刑政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되었던 것은 이처럼 개인의 능동적 의지와 노력에 따라 누구나 善性을 자각하고 기질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학문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주자학의 도덕적 인간관, 그 안에 내포된 진전된 대민인식이 이루어 낸 발전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21) 개국 초 교생의 정원은 부·대도호부·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 15명으로 배당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여기에 다시 증액되어 각각 90명·70명·50명·30명으로 재조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법제에 따른 향교의 전국적인 정원은 15,330명이었다.

22) 李範稷, 「朝鮮前期 校生の 身分」, 『韓國史論』 3, 1976 ; 『朝鮮前期 儒敎敎育과 鄕校의 機能』, 『歷史敎育』 20, 1976 참조.

23) 주자학에서는 ‘性卽理’의 명제가 말해주듯 인간의 존재를 天理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초월적이며 궁극의 본체인 ‘理’이 모든 사물에 ‘分殊之理’로서 내재하게 됨에 따라 존재의 근거 없이 존재하는 사물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별적 존재의 근거, 즉 신분과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여된 이치와 직분이 바로 名分이다. 주자학은 개개의 인간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합당한 名分을 실천하여 ‘理’이라는 보편적인 도덕 질서에 순응할 때, 公義가 구현되는 理想社會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질서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전제로, 모든 사람은 신분의 貴賤을 넘어 도덕 국가를 실현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三綱五倫을 근간으로 한 명분은 곧 개개인의 고유한 이치인 人倫과 동일시됨으로서, 현실의 사회관계=身分階級관계를 내면적인 윤리도덕으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金駿錫, 「朝鮮前期 社會思想 -『小學』의 社會的 機能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29, 1981, 144~159쪽 참조(『韓國 中世 儒敎政治思想史論. I』, 知識産業社, 2005에 재수록).

24) 물론 주자학이 주장하는 민의 도덕적 흥기, 도덕적 실천이란 결국 피지배층인 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이와 같이 유교이념에 입각한 대민교화가 향교 설립의 또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향교에서의 학문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한 지식의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유교적 德目的 일상적 실천수법이 함께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향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교재이다. 이 시기 ‘교화서’를 통한 유교윤리의 보급은 도덕적 인간형의 강조와 상응하여 점차 그 대상이 농민층은 물론 천민층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조선전기 지배층은 일상의 윤리를 내용으로 하는 『小學』이라든가 『烈女傳』·『女誡』·『餘則』 등을 언해(諺解)·인반(印頒)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자들까지 유교 윤리를 쉽게 접하고 讀習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5)</sup> 나아가 종래 양반사족층을 대상으로 하였던 『呂氏鄉約』이나 『正俗』 같은 책도 諺解를 붙여 팔도에 반포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6)</sup> 이어 명종대에 들어와서는 五倫의 道를 알지 못하여 犯法하기가 쉬운 지방의 ‘賤庶’들을 대상으로 각 閭里마다 글을 아는 자를 學長으로 삼아 이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기도 하였다.<sup>27)</sup>

그 중에서도 『소학』은 조선 초기부터 교생들에게 특별히 권장된 책으로서, 각종의 고강이나 과거의 시험과목으로 부과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소학은 주희의 나이 58세 때 (1187) 그의 제자 劉子澄이 편찬한 서적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소학』은 주자학이 제시하는 유교적 가치, 도덕 규범을 요점별로 구체화하여 초록한 입문서로서 교화의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화서라 할 수 있다. 鄉風을 교정한다는 목적 아래 향교에서는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고 교생들이 학습해야 할 제일의 교과로서 중시되었다.

이에 성종대에는 각 군현의 교생들에게 長幼를 막론하고 모두 소학을 학습하도록 엄명하여 전국의 모든 향촌에서 『소학』을 학습하도록 장려하였다. 『소학』 교육은 연산조 때 일시 침체했다가 중종대에 들어와 다시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중종 13년 4월 시독관 기준(奇遵)은 김안국(金安國)이 『소학』을 경상도 내에서 널리 배우게 하여 道內人士가 과거 외에 따로 講學修道의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이에 힘써 民風을 淳厚하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sup>28)</sup> 『소학』은 중종대 언역(諺譯)되어 향교에 널리 반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학을 학습하는 주체가 양반층을 넘어 일반민까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전기 향교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보편적이라는 믿음과 학문을 매개로 하는 개인의 능동적 의지와 노력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설립되고

---

명분을 自認케 함으로써 ‘天理’를 표방하는 봉건질서로의 절대 복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名分질서는 강상윤리를 기축으로 상하신분 간의 차별성·불평등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사상적 근거였기 때문이다.

25) 『中宗實錄』 卷28, 中宗 12年 6月 27日 辛未.

26) 『中宗實錄』 卷32, 中宗 13年 4月 1日 己巳 ; 『中宗實錄』 卷33, 中宗 13年 6月 19日 丁亥.

27) 『明宗實錄』 卷3, 明宗 元年 6月 10日 乙未.

28) 『中宗實錄』 卷32, 中宗 13年 4月 癸巳.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향교에서는 교생들 간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의 격차를 뒤로 하고 모두 師友가 되어 서로의 학문을 規責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비록 부족함이 없는 王公大人의子弟나 公卿將相의 弟姪이라도 일단 학교에 입학하여 그 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貴賤이나 貧富의 차이는 마음에 두지 말고 한결같이 師友로 삼아 그 規責을 따라야 한다.”<sup>29)</sup>는 丁克仁의 주장은 향교의 교관으로서 대민교화(對民教化)에 중점을 두고 교생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2. 향교의 정치적 성격 : 수령과 사족의 鄕村共治 기구

조선전기 국가는 교학체제를 지방관인 수령의 적극적인 주관 아래 관학중심으로 조직하고자 했다. 과거제와 학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교학체제의 일원화를 관학 중심으로 도모한 것이 그것이다. 조선에 들어와 새롭게 재편된 군현제는 중앙의 유교적 정치이념이 지방에까지 파급되는 기반이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의 관학으로서 향교가 군현제의 정비를 통한 집권체제의 강화와 맥을 같이하며 건립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자연히 향교의 설립,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원도 지방관부의 재정에서 충당하였으며, 향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도 모두 관인(官人)이었다. 이는 사학(私學)인 서원(書院)이 처음부터 사족의 공론과 협동에 의해 건립되어 수령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자 한 것과 비교할 때 官學으로서 향교가 갖는 뚜렷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sup>30)</sup>

이처럼 향교의 설립·운영 주체는 군현의 편제 위에서 국가권력을 체현하는 수령이었다. 설립 및 운영의 측면에서 향교는 예조의 소관이었으나 일차적인 책임은 감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該郡 守令이 지도를 규정되어 있다. 수령의 ‘七事’ 가운데 ‘興學校’는 다른 직무보다 더욱 중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감사는 巡歷할 때마다 향교에 들러 謁廟·考講은 물론 수령의 교학정책을 점검하여 고과에 반영하였다.<sup>31)</sup> 이때 고과에 반영되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학교를 수리한 것이 몇 칸인가? 생도 중 독서하는 사람은 몇 명이며, 경서를 통한 사람이 몇 명인가?’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sup>32)</sup> 이에 따라 수령은 향교교육을 진흥시킬 책임을 지고 늘 향교를 순방하여 건물·기물의 수리여부, 기물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하여 교체·보수하며 교생의

29) 『不憂軒集』卷2, 文, 學令 訓導教授時. “王公大人之子弟 公卿將相之弟姪 何事不足 自古及今 皆入于學校 以成就其德 既入于學 則無貴無賤 無貧無富 一遵師友之規責 可也”.

30)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 研究』, 집문당, 1997.

31) 감사는 수령과 함께 ‘管學事’, 즉 도내의 교육과 주민의 교화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는 관내의 교수와 훈도를 감독하였고, 수령에 대한 考課에서 ‘修明學校[興學校]’ 조항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

32) 『太宗實錄』卷12, 태종 6년 12월 乙巳. “修明學校 學校幾間內修治幾間 生徒幾人內讀書幾人 通幾經幾人”

考講이나 文廟享祀도 허술히 할 수 없었다.

수령이 春秋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향교의 釋奠祭는 전 군현 백성을 수령이 교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또한 향교는 왕의 윤음을 비롯한 중대한 政令을 직접 지방민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요컨대 수령에게 향교의 운영은 토호적·분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의 사족들을 집권체제로 포섭하고 同化시켜 나가는 주요 방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향교의 설립과 운영은 향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으므로 그 지역 사족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鄉風 교화나 향교 사무와 관련된 免役의 문제 등 향교의 제반 운영은 사족의 협조와 자문이 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향교의 재정은 사족들의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 사안이었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있었지만<sup>33)</sup> 향교의 설립과 운영은 위낙에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향교의 敎舍 등 시설물의 설치·보수·유지, 교생의 居齋講學에 필요한 供饋財源의 확보, 敎授官의 후생비, 학업활동에 부수되는 제반 비용,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석전례·향음례의 祭需와 校任의 供饋, 과거에 응시하는 교생에 대한 助錢, 學奴의 朔料 등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는 재정만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했다.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는 별도로 수령들이 錢穀을 내어 향교의 중수·중건·비용 등을 마련하거나, 향교전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득하는 일이 흔했다. 이처럼 향교의 재정은 수령 개인의 행정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컸으며, 이는 곧 향교의 재정이 안정적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족들이 자금을 각출하여 향교 운영의 기금을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다. 재정 보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사족층의 위상이 提高되어갔던 것은 그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처럼 향교를 설립·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재지세력의 협조와 재정적 보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향교의 운영은 수령의 독립적 운영이 될 수 없었고 수령과 재지세력의 공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었다.

재지사족의 입장에서도 향교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신분을 재생산하는 기반이었다. 향교는 향정·서원과 함께 재지세력의 집회소이자 여론의 발원지로서 재지사족의 정치적 구심처로서 활용되고 있었다.<sup>34)</sup> 사족층은 향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역의 특권을 스스로 누리거나 혹

33) 1484년(성종 15)에는 「諸邑鄉校給田節目」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1492년에 반포된 『大典續錄』 「戶田」 學田條에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주·부·군·현 등에 각각 400결·10결·7결·5결씩의 學位田을 지급하여 그 재정수요를 감당하도록 하였다. 학위전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募軍의 代納錢, 어장의 網稅, 그리고 향교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瞻學田·光學田 등 기금의 利殖이 있었다.

34) 조선후기에 들어와 재지사족이 향교의 운영을 통하여 향권을 장악하고 지방정치의 구심점으로 집결하는 것은 더욱 보편적인 양상이 되었다. 즉 조선 후기 향교의 운영을 위해 교생의 면강첩(고강을 면제받으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증명서)을 발매한다든지, 校村·校保 등 향교 주변마을을 국가의 일반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향교만을 위해 사역하도록 조치할 때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

은 개별 가호에 대한 요역의 면제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향촌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갔다.<sup>35)</sup>

또한 향교의 교과 과정이 四書五經과 『性理大全』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에서 향교는 그 자체로 최종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설혹 과거를 통한 出仕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교는 재지사족의 도덕적·학문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근간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16세기에 들어와 관학이 오로지 과거공부 위주로만 운영됨에 따라 오히려 風俗·士習을 부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촌의 사족층은 굳이 과거·출사와 연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교 내에서의 講明道學과 도덕적 수양만으로도 향민을 교화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향교가 표방하는 ‘化民成俗’에서 사족층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대민교화를 시행하는 주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 들어와 민은 학문적 수양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 의지와 노력에 따라 善性を 자각하고 기질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과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이 학문과 수양으로부터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점에 있었다. 貴·賤은 業을 달리하므로, 士族이 되지 않고서는 學識을 갖추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sup>36)</sup> 현실적 여건에 따라 학문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민은 사리에 어둡게 되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선한 本性을 유지하거나 是非善惡을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로 간주되었다.

朱子學은 본질상 양반지주층의 정치·사회적 특권을 정당화하고 이를 향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상을 제공하는 학문 사상이었다. 주자성리학이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심화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층적 차별성을 전제한 위에서의 일이다. 봉건사상으로서 주자학의 본질은 학문적 엄격성을 배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봉건적인 신분제를 합리화시키는 데 있었다.<sup>37)</sup> 주자학이 이론상 민에게 학문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동시에 학문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유로 민의 도덕적 자율성과 자발성을 부정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제 민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도덕적 본성을 啓發시켜주는 君子의 교화였다. 향교를 거점으로 하여 행해지는 유교적 의례는 향촌의 사족층이 향풍을 矯正하고 민을 교화시키는 주체임을 자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교가 중앙통제 방식의 관학적 교화체제인 이상 최종적

다.

35) 丁淳佑, 「古文書を 통해서 본 村落社會와 教育의 變動過程 研究」,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제22권 제4호(통권 77호), 1999, 150~153쪽.

36) 『藥圃集』 卷2, 「與名儒胡煥」, 67.

37) 戶川芳郎, 峰屋邦夫, 溝口雄三, (조성을·이동철 옮김), 『유교사』, 이론과 실천, 1990, 277~286쪽.

인 감독과 책임은 감사와 수령에게 있었지만, 향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사족층 또한 향촌 지배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춘추의 釋奠禮와 삭망의 분향은 물론 社稷壇·城隍祠·厲壇의 제향에 참여, 행사를 주관하였다. 나아가 鄉射禮·鄉飲禮·養老禮도 사족의 참여와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의례였다.<sup>38)</sup>

향교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유교적 德目을 전파하고 도덕적 향풍을 기를 수 있는 대민교화의 주요한 방편이었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의례는 민에게 유교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간접적 장치였고, 의례를 시행하고 주관하였던 향교는 대민교화의 중심지로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족층은 향풍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도학을 실천하는 ‘군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이후 향교가 과거제와 연계한 교육적 기능을 점차 상실하면서도 의례적 기능은 그대로 온존할 수 있었던 것은 향교가 사족층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구심처로서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관학인 향교의 최종적인 감독과 통제권은 감사와 수령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향교의 운영에 있어 재지사족은 수령권을 능가하거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었다. 사족층이 ‘教化之主’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며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령과의 공조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는 수령도 마찬가지였다. 수령으로서도 향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지사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였으므로 官습으로써 이들을 통제, 강압할 수만은 없었다. 요컨대 향교의 운영과 정상적인 유지는 수령과 사족의 이해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가운데 相應 相生할 수 있는 ‘共治’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향교의 學습에 官政에 대한 是非를 절대 엄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永嘉誌』 소재 학령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종 13년(1518) 10월에 정부가 반포한 學습은 김안국이 경상도 감사로 있을 때 頒行한 학령 19조와 그가 대사성으로 있을 때 만들어 중외에 반포한 학교모범 16조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永嘉誌』에 수록되어 있는 학령은 이때의 학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9)</sup> 학령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여 학생과 교관 및 수령과의 관계, 학생의 謁聖禮, 사제간의 예절, 학생의 일과, 독서 순서와 考講, 제술에 대한 평가, 학생의 校內생활과 언행수칙 및 학생의 과오에 대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sup>40)</sup> 그 내용 중

38) 향음례는 매년 추수가 끝난 10월에 길일을 택하여 고을에서 나이가 들고 덕행이 있는 어른을 주빈으로 청하여 놓고 揖讓, 奏樂과 酒盃로써 서로 즐기되 예의와 질서를 엄숙하게 하여 相戒하고 誓詞를 읽는 의식이다. 또한 향사례는 매년 춘추 두 차례에 걸쳐 예를 좋아하는 이를 주빈으로 맞고 음양, 주배, 궁사와 음악으로 손과 주인이 즐기는 가운데 덕행이 많은 사람을 표창함으로써 참여한 이들을 교화하는 의식이다.

39) 鄭求福, 「16세기 고문서를 통해서 본 鄉校의 祭儀와 學習」, 『朝鮮時代史學報』9, 1999, 52쪽.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1편 총론 : 朝鮮初期 文教獎勵策과 慶北 鄉校의 發展」, 『慶北 鄉校誌』.

‘諸生 중 조정이나 고을의 정사를 비방하는 자는 벌을 준다’는 조항은 수령의 官政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조성을 엄금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통하여 수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족들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한편 학령 가운데는 향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君子의 도덕적 위상에 어긋나는 이들을 거론, 규제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士族들의 상호규약인 鄉約·洞約의 조항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sup>41)</sup> 예를 들면 “諸生 중 오륜을 범하는 죄를 지어 절행에 흠이 가고 몸과 이름을 더럽힌 자는 모든 유생이 의견을 모아 북을 치고 공박하며 심한 자는 수령에 보고하여 천역을 지게 하고 중신토록 학생에 끼지 못하게 한다.”, “제생 중 혹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세력과 부유함을 믿고 뽐내어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자, 사치를 사랑하여 복식이 못 사람과 다른 자, 싸우고 송사를 좋아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자, 창류 여색에 끌리고 시끄러운 가무를 즐기므로써 예교를 어지럽히고 학공을 더럽히는 자는 학교에서 퇴출한다”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sup>42)</sup>

이와 같은 학령의 조항은 향촌 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을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수령권과의 마찰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는 곧 사족의 향촌 운영과 국가의 지방 지배에 있어 양자 간의 관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共治’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 재지사족의 노력이 향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IV. 조선전기 향교의 교육 기능 쇠퇴와 그 원인

1991, 105~106쪽 참조.

- 41) 향약에서는 守令에 대한 謀害를 不孝·不悌나 亂倫과 같은 悖戾행위로 간주, 黜鄉이라는 최고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수령의 권위와 정사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용납하지 않았다. 『退溪集』 卷42, 「鄉立約條序」附約條, 11ㄴ~12ㄴ. “極罰 事涉官府有關鄉風者, 妄作威勢擾官行私者”, “中罰 受官差任憑公作弊者, 舊官餞享無故不參者”; 『栗谷全書』 卷16, 「海州一鄉約束」, 「過失相規」條. “如有父母不孝 兄弟不和 淫穢亂倫 所行悖戾等事 及謀害土主者 黜鄉 鄉仁共棄絕之”
- 42) “諸生不尙論聖賢 或好爲高談異論 非壞前修 謗訕朝邑之政 或商論財賄 談說酒色者 罰”, “諸生有罪犯五倫者 或虧失節行 玷身汚名者 諸生通論 鳴鼓攻之 甚者或報告邑宰 定賤役 終身不齒於學”, “諸生或恃才自驕 恃勢自貴 恃富自矜 以少凌長 以下凌上者 或豪侈相尙 服飾違衆者 或好爲鬪訟 攘人利己者 或巧言令色 務悅於人者 或引致娼流女色 歌舞喧戲 止宿齋房 以亂禮教 汚黷學宮者 黜學擯斥 改行乃止”(『永嘉誌』 卷4, 學校 鄉校條, 學令). 중종 13년을 전후하여 반행한 김안국의 학령은 안동·경주·상주·성주 등지에 남아 있으며 金富倫의 『雪月堂先生文集』 卷4, 雜著, 「福川鄉校學令禮安鄉校學令中添八十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福川鄉校學令」은 김부륜이 同福 현감으로 있을 때 만든 20조의 學令과 7조의 齊規로 나누어 기술된 향교 학령인데, 주로 禮安鄉校의 학령 중에서 동북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고 거기에 또 20조목을 갖추어 만든 것이다.

## 1. 교관들의 부임 기피와 과거제와의 연계 상실

조선에 들어와 모든 향교에는 유학을 교수하는 관리=교관(敎官)이 파견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교관을 敎授(중6품)·訓導(중9품)로 구분, 郡·縣에는 훈도를, 府·牧 이상은 교수를 파견하도록 법제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령의 책임자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교관의 선임·충원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과 급제자들 중 三館(成均館·校書館·承政院)의 權知들을 교수관에 보임하거나 在地의 생원·진사를 敎導職 또는 學長에 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교적 정치이념을 널리 보급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교관의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교관직은 閑職이었으므로 생원·진사들은 교관직보다는 과거를 통하여 중앙직으로 出仕할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문신 관료 중에서 좌천자를 교관직에 제수하는 예가 많다 보니 교관직은 좌천직으로 통념화되어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종연간에 더욱 심화되어 국가에서는 幼學 出身의 學長이 敎授의 명칭으로 敎官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였고, 중종대에는 어느 정도의 학식만 갖추었다면 사회적 신분과 관계하지 않고 학장으로 임명하는 고육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43)</sup> 이로써 교관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었고 향교의 교육적 성격, 특히 과거제와 연계한 교육적 기능은 점차 유명무실해지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양반지배층이 가문의 지위와 경제적 기반을 확대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과거를 통하여 仕宦의 길로 나가는 것이었다. 요컨대 양반지배층의 정치·사회적 기반을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과거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분을 영속화하기 위한 지적 습득에 대한 양반들의 욕구가 계속 고양되는 상황에서 향교는 점차 교학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었다. 향교의 쇠퇴가 가시화되는 16세기에 들어와 私學=서원이 강학능력을 상실한 官學=향교의 교육적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은<sup>44)</sup>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 2. 官學的 이상과 신분제적 현실의 충돌

향교의 교생은 양반신분만이 아니라 천민을 제외한 良人신분층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교생에게는 군역이 면제된다는지,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會試에 직접 응시하게 하거나 考講에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戶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향교는 민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避役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양반층의 신분적 배타성이 더욱 가시화되는 16세기 이후에도 非士族 출신 교생들이 계속해서 늘어 갔

43) 『中宗實錄』 卷63, 中宗 23年 10月 戊子.

44)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 研究』, 집문당, 1997.

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반면 신분적 특권을 앞세운 사족자제의 취학기피 현상은 점차 증가하여 양반은 入籍하여 과거응시 자격과 면역의 특권을 받되 실제로는 赴學하지 않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었다.<sup>45)</sup>

이에 따라 향교는 과거제의 연계성이 점차 희박해져 갔으며, 학문과 과거, 관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자 하는 양반지배층의 바람과 괴리되어 갔다. 이제 양반사족에게 향교는 능력 있는 이들은 教授·訓導를 기피하고 무식한 무뢰배들만이 모여들어 役을 피하는 곳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16세기에 들어와 “향교에는 균역을 담당할 농민, 즉 양민들이 교생이 되고 있어 교생들에게 주어지는 免役의 혜택을 받고자 하니, 양민들이 교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비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교생은 양반이어야 하며 양반만이 과거제와 연계된 교육과 면역의 특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지배층 중심의 사고와 논리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관학 중심의 교학체제라는 향교의 성격상 양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관학의 이상과 신분제의 현실이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향교는 이미 세종대부터 부진의 조짐을 보였고, 성종대에는 관학의 쇠퇴현상을 놓고 신하들 사이에 큰 논란이 벌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향교에서 반상의 신분적 차별을 강조하고, 非士族 신분에 대한 차별과 제한을 부각시키려는 양반사족층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향교에서 이른바 額內(정원 내 교생)과 額外(정원 외 교생), 東齋와 西齋의 구분을 강화하였던 것은 대표적 예이다. 양반 교생들은 향교의 거처를 양반인 액내교생(額內校生)이 거처하는 동재와 평민이나 庶類인 액외교생(額外校生)이 거처하는 서재로 구분하였다. 액내와 액외유생은 공부하는 장소와 내용, 제례에서의 역할 등에서 큰 차별이 있었고, 이러한 차별은 액외유생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상호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李璿(1560~1635)의 문집에는 이와 같은 갈등의 양상의 단면을 엿볼 수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신분이 한미한 교생들에게 坐次에 차별을 두자는 여론이 향교 내에 일자 이에 가담한 교생이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는데, 이준이 그 그릇됨을 지적하며 훈계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는 鄉中의 교생들이 교생의 族系를 따져 坐次에 長幼[序齒]보다 신분을 우선하고 이로써 액내와 액외,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고자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한데, 이러한 행위는 학교를 설립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였다. 人才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는 門地가 한미하다 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欲上人之心’을 가지고 門地의 崇·卑, 貴·賤을 분별하고자 分坐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은 도학을 연마하는 참된 선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sup>46)</sup>

45) 평민자제의 入校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양반 자체는 赴校를 수치로 여기게 되어 校籍에 登名만 하고 실제의 赴學을 기피하고 있다는 중종대의 기사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中宗實錄』 卷31, 中宗 12年 2月 己巳.

이와 같이 액내의 동재유생과 액외의 서재유생이 서로 비방하고 대립하는 상황은 조선전기 향교가 처한 상황, 즉 官學的 이상과 신분제적 현실이 상충하는 가운데 향교의 관학적 이상이 쇠퇴해가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결국 향교의 교육과정을 회피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양반사족층의 욕구는 향교를 포함한 관학의 쇠퇴와 사족만을 위한 교육 기구인 서원의 발달로 귀결되게 되었다.

## V. 맺음말

조선은 郡縣制를 강화하고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각 郡·縣마다 향교를 세움으로써 주자성리학의 통치이념을 지방 곳곳에 파급시켰다. 새롭게 재편된 군현제를 근간으로 하여 조선전기 국가는 교학체제를 지방관인 수령의 적극적인 주관 아래 관학중심으로 조직하고자 하였다. 과거제와 향교의 학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교학체제의 일원화를 관학 중심으로 도모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향교는 유교이념의 정착과 보급을 위한 지방교화의 중심 기구로서 民風을 淳化하는 교화기능을 담당하였다. 공간적인 면에서 전국적인 군현의 분포와 그에 따른 향교의 설립은 유교 교육의 지역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一邑一校의 원칙 아래 거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설립하였던 것은 유교 교육의 파급력이 한층 더 민에게 접근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를 밑으로부터 추동하였던 요인은 조선에 들어와 民의 사회 경제적 상승으로 말미암아 민에 대한 종래의 일방적 강압적 통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선초 향교는 주자학적 인간관, 즉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보편적이라는 믿음과 학문을 매개로 하는 개인의 능동적 의지와 노력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설립되고 확산되어 갔다.

한편 향교의 설립·운영 주체는 군현의 편제 위에서 국가권력을 체현하는 수령이었다. 수령은 향교를 토호적·분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의 사족들을 집권체제로 포섭하고 同化시켜 나가는 주요 방편으로 삼았다. 그러나 향교의 설립과 운영은 향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으므로 그 지역 사족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향교를 설립·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재지세력의 협조와 재정적 보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향교의 운영은 수령의 독립적 운영이 될 수 없었고 수령과 재지세력의 공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재지사족의 입장에서든 향교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신분을 재생산하는 기반이었다. 때문

46) 『蒼石先生文集』 卷11, 書, 與校中. “品流一別 班列異序 一以啓矜高自滿之心 一則有抑勒未伸之恨 其規模之褊小 非禮讓相先之意也 … 人之族系高下 豈年少輩所知 末路人口 恒多孟浪 一被訾毀 家莫置喙 古所謂金鎗之痕易合 萋斐之織難消 甚言被構者之難自解也 設令其人門地有可論 而世代已久 將自立於鄉黨 爲護持門戶計 而一朝爲人所詆 終其身坎軻 譬如草木新生 遽遭風雨之厄 索然無復生意 恐非仁者所忍爲也 吾鄉既有鄉案 辨世族矣 又設兩頭坐 起一閭端於杏壇絃誦之地 此豈前日厚風乎”

에 양반사족은 ‘教化之主’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며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수령과의 공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이렇듯 향교의 운영과 정상적인 유지는 수령과 사족 모두에게 향촌 지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관건이 되었으므로 향교는 양자 간 이해관계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共治’의 공간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전기 향교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교관의 질적 저하는 과거제와 연계한 향교의 교육적 기능을 점차 붕괴시켰고 비사족층의 입교를 허용하는 향교의 관학적 이상은 학문과 과거, 관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자 하는 양반지배층이 향교를 외면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결국 관학의 이상과 신분제의 현실이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향교의 관학적 이상은 점차 쇠퇴해갔고 사족만을 위한 교육 기구인 서원의 발달을 불러오게 되었다.

[논문접수:2009.12.09, 심사시작:2009.12.10, 심사완료:2010.01.21]

주제어: 향교, 단양지역, 조선왕조, 서원

<ABSTRACT>

Political and social functions of Hyanggyo(郷校) and causes of the decline  
in the Early-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Kim, Jung-Shin

The pro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Political and social functions of Hyanggyo and causes of the decline in the Early-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Hyanggyo in Koryo Dynasty was installed only in some areas, Hyanggyo in Joseon Dynasty was established in all regions with maintenance of local systems

Hyanggyo features as a national school is divided in social functions and political functions in two ways. First, social features of Hyanggyo was educational organization to training the Reserve Officials through its association with the state examination, was to enlightening the common people that was governance targets. Second political features of Hyanggyo was a ruling mechanism that the local governor(守令) and the local regions(在地士族) rules the country together, 'co-rule' mechanism(共治). To operate smoothly Hyanggyo, the local governor would require the cooperation and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he local regions. In addition, the local regions were able to reproduce their social status or identity get the utmost out of Hyanggyo. This corresponds to an understanding of both sides, naturally formed 'co-rule' by the local governor and the local regions in the operation of Hyanggyo, and even the rule of the country

However, Owing to deficiency of professor, loss of connection with the state examination Hyanggyo in Joseon Dynasty declined increasingly, and Hyanggyo of the educational function was replaced by a private school(書院).

key word : Hyanggyo(郷校), Danyang district, Joseon Dynasty, private school